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6. 27.(수) 10:37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석진 상임위원 (1인)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7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석진 위원께서는 공무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셨습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8차 및 제29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30-370)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전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문구 수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관계법률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의 합리적 정비를 위해 4개의 법안의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5월에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5월 10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제 합리화 관련해서는 방송법의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등의 변경 신고와 3페이지입니다. 전파법상 무선국의 폐지·운용 휴지·재운용 신고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인가 간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 민원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해서 별도의 연장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제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방송법 결격 사유 중 대표자·

방송편성책임자의 행위무능력·파산으로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방송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을 '결격사유 해소 후 즉시' 이 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지난 5월에 보고된 사안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봐서 원안 처리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30-371)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제 중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님에게 위임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일괄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을 휴지·폐지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올해 2월에 법제처에서 범부처 일괄 법령 개정 추진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비규제 사항으로 결정되어서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없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인확인기관 휴지·폐지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행위 명확화입니다. 본인확인기관 휴지·폐지 신고, 즉 망법상 제23조의3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심의·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안전도 간단한 사안이라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30-372)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더큰나눔애틀엔, (주)엠브레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은 위치정보 법령 준수 등 아래 박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허가 신청을 공고하여 접수하였고, 접수 결과 (주)더큰나눔애틀엔, (주)엠브레인 등 총 2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개 법인에 대한 주요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8년 5월 31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2개 모두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 평가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장님, 이 보직 말고 첫 허가 심사였었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위치정보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허가 신청법인 개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법인이 대부분 그 설명회에 참석해서 그 사항에 대해 숙지를 하고 신청하는 경우여서 허가 신청한 법인이 요건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치정보사업자는 지난 제3기 방통위 때 상당히 많은 사업자를 허가하고 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기 때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사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로서의 위치정보사업자 신고도 있고 또 허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B2C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사업자도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많고 우리가 협회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또 새로 맡으셨으니까 기존 제3기의 계획들을 잘 이어 받아서 제4기 방통위에서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던졌냐 하면 사업자 허가 심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대로 해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금까지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준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저도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엠브레인은 원래 여론조사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여론조사 사업자와 달리 이번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판매하는 제조사로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름이 같은 것 같은데...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전혀 다른 회사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다른 회사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8-30-373)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미디어랩 법”이라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되,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획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미디어랩

법 중 해당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주요경과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행위무능력자, 파산자는 광고 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방통위는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행위무능력, 파산 등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같은 사유에 따라 처분 받은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지 않도록 미디어랩 제12조제1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좌우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 사안도 법제처의 불합리한 일괄 법령 정비에 관련된 사안으로 지난 4월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고,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현숙 재정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재정팀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해당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지상파 방송사업자입니다.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최종 징수율은 2017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중소방송 사업자 중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사는 최종징수율이 하향됩니다.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 6개사는 상향되게 됩니다. 지역·중소 지상파의 최종징수율 조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방송사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채널A를 제외한 5개사가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을 상향하되, 평균 자본결손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점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최종징수율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예고와 기재부·법제처·규개위의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위원회가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12월까지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문제는 결국 방송사업자들의 운영을 위한 재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같은 경우 그 사이 쪽 유지되어 온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종편 같은 경우 지금 당기순이익을 낸 쪽과 손실을 낸 쪽의 편차가 굉장히 큼니다. 어떤 사는 110억원 흑자를 낸 반면에 어떤 사는 48억원 이상 적자를 낸 상황에서 이것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이번으로 끝을 내고 종편사들도 광고매출액의 구간을 정해서 징구하도록 해야 법과 시행령에 나오는 원칙에도 더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채널A 같은 경우에는 48억원 적자인데도 내놓아야 하고, 그다음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4억원 정도 흑자인데 사무처 원안대로 징구를 하면 거꾸로 그 돈을 내고 나면 적자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지상파 같은 경우 MBC가 288억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120억원 징구한 예가 있고, 또 SBS 같은 경우도 140억원 흑자를 냈는데 기금을 160억원 징구한 사례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징구하는 목적이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편들의 기금 징구는 구간을 지상파처럼 정하는 것을 꼭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규정된 사업자들 말고 일반 등록PP 가운데도 굉장한 매출을 내고 흑자를 많이 내는 등록PP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법안을 낸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성장해서 여러 가지 방송통신에 관한 인프라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 부분도 역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법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만 강조를 드리고 이번에는 원안대로 정했으면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종편이나 보도PP의 경우 올해 징수율이 1.5%로 작년보다 0.5% 상향됐습니다. 이는 방송광고 매출액이 전년대비 33% 늘어난 점과 IPTV 사업자도 종전에 이런 방식으로 같은 비율로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나 평가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반드시 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좀 전에 표철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SO나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은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또 홈쇼핑 사업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방발기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 그리고 보도PP 사업자도 광고매출 외에 협찬매출액, 재송신 매출액,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등이 포함된 방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조금 전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편이나 보도PP도 지상파방송과 같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징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재정 팀이 예산안 국회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현숙 재정팀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표철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앞으로 방송 시청 행태가 급속히 VOD를 통한 시청 행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집에 가더라도 집안에 큰 TV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아니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OTT를 통해서 보는데 이것이 이런 시청행태의 변화에 따른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관계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0분 폐회 】